

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기획경제위원회
전문위원

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6. 12

나. 회부일자 : '97. 6. 12

3. 제안이유

○ 충북21세기위원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한 정책자문기구로
도정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과 개방화·정보화 추세에
부응한 정책개발,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을 병행하기 위
하여 설치, 운영하고 있으나,

○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어 이의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
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,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
위함.

4. 주요골자

○ 임기연장 : 당초1년 ⇒ 변경 2년

- 위원의 임기연장을 통하여 위원회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

- 위원회의 노하우 축적을 통한 도정의 활력화 도모

- 기타사항 : 현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21세기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이는 도정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과 개방화·정보화 추세
에 부응한 정책개발,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을 병행하기 위
하여 순수민간인을 대상으로 구성한 위원회이나 위원의 임기가 1
년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1년단위 마다 위원을 새로이 위촉해야 하
는 번거로움이 따라 위원회의 연속성 안정성 확보로 노하우 축적
을 통한 도정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
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